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85
----------	-------

발의연월일 : 2026. 5. 7.

발 의 자 : 문진석 · 김기표 · 박민규
박상혁 · 홍기원 · 이정문
박정현 · 강준현 · 이연희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자격, 직무범위 등”을 “자격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1. 제4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2. 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량의 제원 측정, 적재된 화물의 종류 및 중량 등에 대한 조사
3. 제78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요구
4.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직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 ⑦ (생략)</p> <p><신 설></p>	<p>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4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u> 2. <u>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량의 제원 측정, 적재된 화물의 종류 및 중량 등에 대한 조사</u> 3. <u>제78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요구</u> 4. <u>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u> 5. <u>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u>

<p>⑧ <u>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u>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u>정하는 직무</u></p> <p>⑨ -----<u>자격 등</u> <u>에 관하여</u>----- -----.</p>
---	---